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성평등가족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6월 27일, 정부

나. 회부일자 : 2024년 6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18회국회(정기회)

-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24. 9. 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22회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2. 12.) 상정, 축조심사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2. 19.) 상정, 축조심사

- 제432회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4.)

-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2026. 2. 5.)

-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정부)

종전에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아이돌보미가 배치되어 직접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이 옥 순)

가. 아이돌보미 채용 등의 업무 수행 주체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

개정안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서비스제공기관이 수행하도록 업무 수행 주체를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4제2항제1호·제2호 삭제, 제13조제1항·제4항 및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건강진단) ① (생략)	제10조의2(건강진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은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생략)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
1. <u>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u>	<삭 제>
2. <u>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u>	<삭 제>

현행	개정안
<u>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u> 3. ~ 6. (생략) ③ ~ ⑤ (생략)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① 서비스기관은 <u>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u>를 서비스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u><신설></u> ⑤ ~ ⑦ (생략)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u>광역지원센터</u>는 소속 <u>아이돌보미</u>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① ----- <u>아이돌보미</u>-----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서비스기관은 <u>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미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u>서비스기관</u>은 ----- -----.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에 따르면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함)

1)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2(건강진단) ②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는 ①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0조의2제2항), ②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제10조의4제2항제1호·제2호), ③ 소속 아이돌보미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제14조제1항),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함)은 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를 서비스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함(제13조제1항).

현행과 같이 광역지원센터와 서비스기관의 업무수행 범위가 정해진 연혁을 살펴보면, 현행법 이전에는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 채용 및 복무관리, 소속 아이돌보미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이용가정에 대한 아이돌보미 연계 등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음.

그런데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발생 등으로 인해 아이돌보미 자격 및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아이돌봄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3.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4.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

5. 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지원 및 서비스 홍보

6. 그 밖에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① 서비스기관은 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를 서비스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광역지원센터는 소속 아이돌보미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서비스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서비스기관은 노무 관리 등 증가하는 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서비스기관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됨에 따라 소속 아이돌보미의 탄력적 수급에도 한계가 있어 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내용으로 개정·시행(개정: 2020. 5.19., 시행: 2022. 1. 1.)되었음.

이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시·도지사가 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서비스기관에서 수행하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광역지원센터가 아이돌보미 채용·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서비스기관은 광역지원센터로부터 아이돌보미를 직접 배치받아 구체적·직접적인 노무 지휘를 하는 사용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광역지원센터와 서비스기관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아이돌봄업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이하 ‘「파견법」’이라 함)이 정하는 파견 대상업무에 해당되지

-
-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않아 「과건법」의 위반소지³⁾가 있으며,

특히 현행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광역지원센터는 광역 규모 아이돌보미 인원에 대한 직접 채용 및 복무관리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등으로 아이돌보미 채용 및 복무관리, 보험가입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여전히 서비스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⁴⁾, 2024년 7월 기준으로 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하지 않은 시·도(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도 존재함.

한편, 이처럼 광역지원센터가 현행법대로 지정·운영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아이돌보미 등 319인으로부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2022. 3. 21.)가 접수된 바 있고⁵⁾, 감사 결과 “해당 법률의 개정 과정에서 여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보미의 근로계약 체결 주체는 시·도의 광역지원센터인 반면에 아이돌보미의 실제 근무 및 관리 주체는 시·군·구의 서비스기관으로 불일치함에 따라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어 향후 법적 문제와 책임 소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법제처)

여성가족부가 노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서비스기관은 광역지원센터로부터 아이돌보미를 직접 배치받아 구체적·직접적인 노무 지휘를 하는 명실상부한 사용자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광역지원센터와 서비스기관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하며, 아이돌보미업무는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파견 대상업무에 속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파견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상기 파견관계는 불법 파견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4) 현실적으로 최대 5,600명(2023.12월 기준 경기 5,688명, 서울 4,037명 등)이 넘는 아이돌보미를 직접 채용·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관이 시·도에 없어 지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

5) 여성가족부는 법 개정((2020. 5.19)과 시행일(2022. 1. 1.)간 준비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직전(2021년 12월 24일)에 임시적 조치로 아이돌보미 가이드라인을 시행하

가족부의 부실 대응으로 인해 법적 쟁점 및 현실적 여건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법률이 개정되어 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하기가 곤란하게 되었고, 이에 광역지원센터 지정 및 아이돌보미 채용 조정 등에 대해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주의·통보)”을 통보하였음.⁶⁾

이에 개정안은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채용 등의 업무를 서비스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업무의 주체를 광역지원센터에서 서비스기관으로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과 현실운영 체계가 괴리되어 있다는 점, 「과건법」 위반 소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법적 쟁점 및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불가피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서비스기관의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서비스기관에서 수행하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개정된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서비스기관의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봄.

였고, 2022년 2월에 광역센터 지정 유예조치와 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아이돌봄 가이드라인 내용을 “2022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지침)에 포함하여 시행하였는바, 법 개정사항과 다르게 광역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임.

6) 정부는 제21대 국회에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채용 등의 업무를 다시 서비스기관이 수행하도록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3. 3.30. 정부안)」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개정안에 대하여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광역지원센터가 아이돌보미의 수급계획 수립과 함께 직접 근로계약, 복무관리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는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아이돌보미 채용 등의 업무 수행기관을 변경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200758,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이 회부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 김한규)

개정안 회부(2024년 6월 28일) 이후인 2025년 4월 22일 개정되어 2026년 4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에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수정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의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

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2.

제안자 : 성평등가족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개정안 회부(2024년 6월 28일) 이후인 2025년 4월 22일 법률 제20932호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되어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바, 동 법률은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서비스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기관으로 변경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등록 대상으로 하며 소속 아이돌봄사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법과 조문 체계 및 내용이 상이함.

이에 개정안의 내용을 법률 제20932호에 반영하고 일부 관련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모두개정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본문 중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제11조의2에 따른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10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봄사”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봄사와 아

이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미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광역지원센터는”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법률 제20932호	개정안	수정안
제6조(결격사유)(생략)	제6조(결격사유 등) ①·②(생략) ③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제6조(결격사유)(현행과 같음)	제6조(결격사유 등) ①·②(법률 제20932호와 같음) ③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 ----- ----- ----- ----- --. ④ (법률 제20932호와 같음)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생략)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생략)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현행과 같음)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법률 제20932호와 같음)

재지를 관할	-----
하는 시·도	-----
경찰청장 또	-----
는 경찰서장	-----
에게 「형의	-----
실효 등에 관	-----
한 법률」 제	-----
6조에 따른	-----
범죄경력조회	-----
를 요청할 수	-----
있다. 다만,	-----
아 이 돌 봄 사	-----
또는 육아도	-----
우미로 활동	-----
하려는 사람	-----
이 범죄경력	-----
조회 회신서	-----
를 <u>제10조의4</u>	----아이돌봄
에 따른 <u>아이</u>	<u>서비스제공기</u>
<u>돌봄광역지원</u>	<u>관</u> -----
<u>센터 또는 제</u>	-----
<u>11조의2에 따</u>	-----
<u>라 등록된 아</u>	-----
<u>이돌봄서비스</u>	-----
<u>제 공 기 관 에</u>	-----
직접 제출하	-----.

재지를 관할	-----
하는 시·도	-----
경찰청장 또	-----
는 경찰서장	-----
에게 「형의	-----
실효 등에 관	-----
한 법률」 제	-----
6조에 따른	-----
범죄경력조회	-----
를 요청할 수	-----
있다. 다만,	-----
아 이 돌 봄 사	-----
또는 육아도	-----
우미로 활동	-----
하려는 사람	-----
이 범죄경력	-----
조회 회신서	-----
를 제10조의4	---아이돌봄
에 따른 아이	서비스제공기
돌봄광역지원	관-----
센터 또는 제	-----
11조의2에 따	-----
라 등록된 아	-----
이돌봄서비스	-----
제 공 기 관 에	-----
직접 제출하	-----

[illegible]

된다.	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 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③ (생 략)	④ (생 략)	③ (현행과 같 음)	④ (법률 제2 0932호와 같 음)
제10조의4(아이 돌봄 광역지원 센터) ① (생 략)	제10조의4(아이 돌봄 광역지원 센터) ① (생 략)	제10조의4(아이 돌봄 광역지원 센터) ① (현 행과 같음)	제10조의4(아이 돌봄 광역지원 센터) ① (법 률 제20932호 와 같음)
② 광역지원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	② 광역지원센 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 ----- -----.	② ----- ----- ----- -----.
<u>1. 아이돌보미</u> <u>채용, 근로</u> <u>계약 체결</u> <u>및 복무관리</u>	<u>1. 아이돌봄사</u> <u>(제 11 조 에</u> <u>따른 지정</u> <u>아이돌봄서</u>	<u><삭 제></u>	<u><삭 제></u>

	<u>비스제공기</u> <u>관에 배치하</u> <u>는 아이돌봄</u> <u>사에 한정하</u> <u>다) 채용, 근</u> <u>로계약 체결</u> <u>및 복물관리</u>		
<u>2. 아이돌봄서</u> <u>비스 제공</u> <u>중 안전사고</u> <u>로 인하여</u> <u>생명·신체</u> <u>에 피해를</u> <u>입은 아이돌</u> <u>보미와 아이</u> <u>에 대한 손</u> <u>해배상보험</u> <u>가입 등 필</u> <u>요한 안전</u> <u>조치</u>	<u>2. 아이돌봄서</u> <u>비스(제11조</u> <u>에 따른 지</u> <u>정 아이돌봄</u> <u>서비스제공</u> <u>기관에서 제</u> <u>공하는 아이</u> <u>돌봄서비스</u> <u>에 한정하</u> <u>다) 제공 중</u> <u>안전사고로</u> <u>인하여 생명</u> <u>·신체에 피</u> <u>해를 입은</u> <u>아이돌봄사</u> <u>와 아이에</u> <u>대한 손해배</u> <u>상보험 가입</u> <u>등 필요한</u>	<u><삭 제></u>	<u><삭 제></u>

	<u>안전 조치</u>		
3. ~ 6. (생략)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3. ~ 6. (법률 제20932호와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법률 제20932호와 같음)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등) ① 서비스기관은 <u>광역지원센터</u> 소속 <u>아이돌보미</u> 를 서비스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등) ① 지정 <u>아이돌봄서비스</u> 제공기관은 <u>광역지원센터</u> 소속 <u>아이돌</u> <u>봄사</u> 를 지정 <u>아이돌봄서비스</u> 제공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등) ① ----- <u>아이돌</u> <u>보미</u> ----- ----- ----- ----- -----.	제13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등) ① ----- ----- - <u>아이돌봄사</u> - ----- ----- ----- -.
②·③ (생략)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법률 제20932호와 같음)
< <u>신 설</u> >	< <u>신 설</u> >	④ <u>서비스</u> 기관은 <u>아이돌</u> <u>봄 서비스</u> 를	④ 지정 <u>아이돌</u> <u>봄서비스</u> 제공기관은 아

⑤ ~ ⑦ (생략)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u>광역시</u> <u>원센터</u>는 소속 <u>아이돌보미</u>와 <u>표준</u>	⑤ ~ ⑦ (생략)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u>광역시</u> <u>지원센터</u>는 소속 <u>아이돌</u> <u>봄사</u>와 <u>표준</u>	<u>제공하는</u> <u>중</u> <u>발생한</u> <u>안전</u> <u>사고로</u> <u>인하</u> <u>여</u> <u>생명·신</u> <u>체에</u> <u>피해를</u> <u>입은</u> <u>아이돌</u> <u>보미와</u> <u>아이</u> <u>에게</u> <u>보상하</u> <u>기</u> <u>위하여</u> <u>미</u> <u>리</u> <u>손해배상</u> <u>책</u> <u>임</u> <u>보</u> <u>험</u> <u>에</u> <u>가입</u><u>하고</u> <u>그</u> <u>밖에</u> <u>안전</u><u>에</u> <u>필요한</u> <u>조치</u> <u>를</u> <u>취하여</u><u>야</u> <u>한다.</u>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u>서비</u> <u>스기관</u>은----- ----- -----	<u>이돌봄서비스</u> <u>를</u> <u>제공하는</u> <u>중</u> <u>발생한</u> <u>안</u> <u>전사고로</u> <u>인</u> <u>하여</u> <u>생명·</u> <u>신체에</u> <u>피해</u> <u>를</u> <u>입은</u> <u>아이</u> <u>돌봄사와</u> <u>아</u> <u>이에게</u> <u>보상</u> <u>하기</u> <u>위하여</u> <u>미리</u> <u>손해배</u> <u>상</u> <u>책임보험</u> <u>에</u> <u>가입</u><u>하고</u> <u>그</u> <u>밖에</u> <u>안전</u> <u>에</u> <u>필요한</u> <u>조</u> <u>치를</u> <u>취하여</u> <u>야</u> <u>한다.</u> ⑤ ~ ⑦ (법률 제2093 2호와 같음)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u>지정</u> <u>아이돌봄서비</u> <u>스제공기관</u>은----- ----- -----
---	--	--	--

로 계 약 서 를 작 성 하 여 야 한다. ② (생 략)	근로계약서를 작 성 하 여 야 한다. ② · ③ (생 략)	----- -----.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 ----- -----. ② · ③ (법률 제 20932호와 같음) 부 칙 (개정안과 같 음)
--	--	--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본문 중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제11조의2에 따른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10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은 아이돌봄사와 아이에게 배상하기 위하여 미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봄사”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광역지원센터는”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결격사유 등) ①·② (생략) ③ <u>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u> ④ (생략)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 한 범죄경력조회) ① (생략) ② <u>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0조 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 센터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 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 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제1 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 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u>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결격사유 등)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u>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 돌봄서비스제공기관</u>----- -----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 한 범죄경력조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u>아이돌 봄서비스제공기관</u>----- ----- ----- ----- ----- ----- ----- -----

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③ ~ ⑤ (생략)

제10조의2(건강진단) ①·② (생략)

③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제11조의2에 따른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건강진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된다.

④ (생 략)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생 략)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봄사(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배치하는 아이돌봄사에 한정한다)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2. 아이돌봄서비스(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한정한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봄사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3. ~ 6. (생 략)

③ ~ ⑤ (생 략)

제11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 ⑤ (생 략)

<신 설>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삭 제>

<삭 제>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

제13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의 임무 등) ① 지정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은 <u>광역지원센 터 소속 아이돌봄사</u>를 지정 아 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내에 배 치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u>광역지원센터</u>는 소속 아이돌봄 사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u>는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 여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은 아이돌봄사와 아이에게 배상하 기 위하여 미리 손해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그 밖에 안전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u> 제13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의 임무 등) ① ----- ----- <u>아이돌봄사</u>----- ----- -----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u>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 <u>은</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